

한독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HANDOK
Business partners



제 1장 서문

1. 목적	03
2. 범위	03
3. 구성	03
4. 용어의 해설	03
5. 신고 및 제보 채널 이용	04
6. 적용	04

제 2장 행동 강령

1. 윤리 및 준법	05
2. 인권 및 노동	07
3. 환경, 건강 및 안전	08
4. 품질	10
5. 경영 시스템	10

제 1장 서문

1. 목적

한독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함)은 ‘한독 행동규범’에 기술되어 있는 한독의 가치와 원칙을 토대로 한독과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협력사에 대해 한독이 기대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구체적 실행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범위

본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한독 비즈니스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함)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협력 파트너사 등 한독과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거래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 강령에 명시된 원칙을 조직 내에 구현하고, 구성원에게 전달하여, 한독과 업무를 할 때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구성

본 행동강령은 아래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있어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한독 협업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윤리 및 준법
- 2) 인권 및 노동
- 3) 환경, 건강 및 안전
- 4) 품질
- 5) 경영 시스템

4. 용어의 해설

- 생물 다양성: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종 내, 종 간, 생태계 다양성 포함)
- 뇌물: 공적 또는 법적 의무를 가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치 있는 물품의 제공, 수수, 요구
- 부패: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으로 사적 이익 또는 불법적 이익을 얻는 행위
- 문화: 조직의 태도, 가치, 신념의 조합으로 운영 방식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침
- 기증자: 연구 목적으로 조직, 세포, 장기 등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사람

제 1장 서문

- **실사:** 비즈니스 거래 또는 운영 검토를 위한 기업 또는 조직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내부 이해관계자:**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소유하는 개인
- **외부 이해관계자:** 기업 외부에서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조직(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지역 사회 등)
- **온실가스(GHG) 배출:** UN 기후변화협약에서 다루는 6가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배출
- **인권:**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UNGPs)에 따라 정의된 권리(국제 인권 선언, ILO 기본 원칙 및 권리 포함)
- **지역사회:** 기업의 운영 및 활동 주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

5. 신고 및 제보 채널 이용

협력사는 한독과의 거래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윤리·준법 및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항이나 위반 우려를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한독에 제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독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제보 채널인 ‘한독투명경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한독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독은 제보자의 신원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협력사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선의로 제기한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제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협력사는 윤리·준법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본 제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 한독 투명경영센터 바로 가기 : <https://www.handok.co.kr/etc/center#page-content>

6. 적용

본 행동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dok.co.kr/page/ethics2#page-content>)

본 행동강령의 조항과 각 협력사와 계약 조항이 상충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 2장 행동 강령

1. 윤리 및 준법

한독은 협력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며, 한독과 업무를 할 때에 협력사의 직원이 한독의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길 기대합니다.

(1) 뇌물금지 및 부패방지

한독은 어떤 형태로든 부패 또는 뇌물 제공 및 수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독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영국 뇌물수수방지법 (UK Bribery Act)

협력사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독 또는 다른 제3자로부터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제안 또는 수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한독의 임직원에 대한 모든 혜택, 수수료, 커미션, 배당금, 선물, 현금, 서비스, 대가 등 모든 종류의 유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협력사는 소속 직원은 물론, 모든 계열사, 대리인, 하도급업체, 중개인에게도 뇌물금지 및 부패방지 원칙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2) 공정한 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독점 금지 및 공정한 사업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금품, 선물 및 향응

한독 및 한독의 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금품, 선물, 접대 및 향응 수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 및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 사업 거래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등 선물, 교통 및 숙박 또는 식사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
- 설, 추석 등 명절에 통상적 관례 내의 10만원이 넘지 않는 음식물 및 선물
- 경조사 시 10만원 이내의 경조금 및 선물
- 사업 거래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1인 5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 2장 행동 강령

그러나, 상기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안도 구매, 계약, 감사,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 또는 직후 시기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과 선물, 접대의 제공은 금지합니다.

(4) 이해충돌 관리

협력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한독과의 사업 및 거래 관계에 있어 실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거나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이 확인된 경우, 한독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한독은 협력사가 개인정보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를 기대합니다.

협력사는 한독을 대신하여 수신, 접근 또는 처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 독점 및 기밀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무단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행위가 협력사 또는 한독에게 개인적, 법적 평판 및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

협력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고려하여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7)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한독 및 한독 자회사의 지식재산권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사, 경쟁사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한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한독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한독 및 한독의 자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를 제품의 광고 또는 홍보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정확한 기록 관리

한독과의 거래 또는 한독을 대신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비용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관련 회계원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시에 그리고 합리적인 세부 내용을 기록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2장 행동 강령

(9) 동물복지

협력사가 연구, 시험, 제조 또는 기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체(Replace)·감소(Reduce)·개선(Refine)의 3Rs 원칙을 고려하여 이행하며,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대체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불가피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최소화하고, 취급·실험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도록 인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0) 환자 안전 및 정보 접근 보장

협력사는 환자, 임상시험 대상자 및 연구 목적 기증자의 건강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2. 인권 및 노동

협력사는 소속 직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한독의 인권경영 이행 방침을 고려하여, 협력사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 실사 가이드선 등 인권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노동

협력사는 자유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소속 직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구속에 의한 강제 노동에 참여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사업 및 시설에서 아동 노동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근무자는 법적 고용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소속 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생각이나 관점·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고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 시 인종, 성별, 나이, 종교, 혼인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아야 하며,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 2장 행동 강령

(4)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직원에게 괴롭힘, 비인도적 대우, 신체적·정신적 강요 또는 언어적 폭력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성희롱·학대·체벌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임금, 복지 및 근로시간

협력사는 관련 법령 및 고용계약에 따라 최소임금, 초과근무 수당, 법정 복지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 또는 불가입의 권리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7) 지역사회 존중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환경, 건강 및 안전

한독은 협력사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소속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안전·보건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환경 관련 허가

협력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업계 지침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필수 환경 허가, 면허, 정보 등록 등을 모두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작업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폐기물 및 배출물 관리

협력사는 인체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폐수 및 배출물을 자연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에 적절히 관리, 통제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 유효성분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경우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PiE),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2장 행동 강령

(3) 기후 변화 대응

협력사는 기후변화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공급망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4) 자원 효율성

협력사는 자원 순환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자원 소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고려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생물 다양성 보전

협력사는 사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가능한 경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과 환경 발자국을 저감 및 완화해야 합니다.

(6) 유출물 및 방출물 관리

협력사는 사고로 인한 환경 유출 및 방출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로 인한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7) 작업 환경의 안전

협력사는 작업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들에게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제약 화합물 및 제약 중간 생성물 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안전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작업장 관리를 충실히 실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 근로자의 건강 및 보호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소속 직원이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 위험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9) 안전취급 및 공정 안전

협력사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화학물질의 유출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2장 행동 강령

4. 품질

협력사는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1) 품질/납품 수행

협력사는 한독의 요구사항 또는 계약사항에 따라 적시 납품을 보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제품 품질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내부 결함,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출하감소를 측정하여 지속적 개선을 입증해야 하며, 한독이 제기하는 모든 불만 사항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2) 품질 시스템

협력사는 자사의 제품이 생산 및/또는 유통되는 국가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품질 시스템 및 제품 등록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3) 제품 보호

협력사는 제품 및 원료가 변조, 위조 또는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모든 관련 법규 및 본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해,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검토와 법규 모니터링, 책임 배분, 리스크 완화 조치,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한 적절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1) 준수 문화 조성 및 책임 있는 경영

협력사는 조직의 태도, 가치관 및 신념이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방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행동강령에 대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의 경영진은 본 행동강령에 대한 준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 있는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본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이 전사적으로 이해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사업 환경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 2장 행동 강령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협력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및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공급망 관리

협력사는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출처를 포함한 자사 공급망에 대한 관리 및 실사(due diligence)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관련 법규 및 본 행동강령의 요구사항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와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6) 교육 및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본 원칙을 근로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지속적 개선

협력사는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감사 또는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부족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내부통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8) 고충처리 및 내부제보

협력사는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윤리, 인권 및 노동, 환경, 건강 및 안전, 품질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및 내부제보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제보 프로세스는 소속 직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제보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9)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협력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효과적인 비상 대응 계획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10) 사건 대응 및 피해 구제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또는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사해야 하며,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이력

개정 이력

번호	문서명	작성/개정일자	변경 사유
REV.01	한독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	2021.07.01.	최초 제정
REV.02	한독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	2026.06.01.	1차 개정

The Health Innovator  **HAN/DOK**

한독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

© 2026 (주)한독. All rights reserved

제 작 : (주)한독 Ethics & Compliance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문 의 : Ethics&Compliance@handok.com